

## PRIMA INDUSTRIE

### 그룹 내부고발 정책

## 색인

<u>용어 정의</u> .....	3
1. <u>목적</u> .....	5
2. <u>범위</u> .....	5
3. <u>원칙</u> .....	5
4. <u>내부고발 관리</u> .....	6
4.1. <u>신고할 수 있는 사람</u> .....	6
4.2. <u>신고할 내용 및 비리행위 신고의 특성</u> .....	7
4.3. <u>내부고발 처리를 관리하는 담당기관 및 신고 채널</u> .....	8
4.4. <u>내부고발 관리 절차</u> .....	8
4.4.1. <u>단계 1: 예비 분석</u> .....	8
4.4.2. <u>단계 2: 조사</u> .....	10
4.4.3. <u>단계 3: 조사 후 취해야 할 조치의 정의</u> .....	10
4.4.4. <u>단계 4: 보고</u> .....	11
4.5. <u>기록</u> .....	12
4.6. <u>모든 보복 및/또는 차별 행위의 처리</u> .....	12
4.7. <u>징계조치의 적용</u> .....	12
5. <u>역할 및 책임</u> .....	12
5.1. <u>직원</u> .....	13
5.2. <u>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u> .....	13
5.3. <u>비리행위의 신고에 참여한 회사의 감독위원회</u> .....	13
6. <u>기타 관련 문서</u> .....	14
<u>부록 1 – 내부고발 등록부 템플릿</u> .....	15
<u>부록 2 – 비리행위 신고 접수에 대한 답변</u> .....	17
<u>부록 3 –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u> .....	18

용어 정의

**이탈리아 입법령 231/2001 호 또는 법령** – 이탈리아 입법령(2001 년 6 월 8 일), 231 호, 법(2000 년 9 월 29 일) 제 11 조 300 호 및 후속 개정 및 추가에 의거 법인, 회사, 협회의 행정 책임 규율 포함(법인이 없는 경우 포함)

**비리행위 신고의 수신자** –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

**EU 지침 2019/1937** - EU 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관련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위원회의 지침

**비리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 – Prima Industrie 가 내부고발자에게 비리행위 신고의 조사 착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답변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 Prima Industrie 가 내부고발자에게 조사의 결론에 대해서 및 적절한 경우 그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답변

**부서** – Prima Industrie 그룹의 각 부서 조직

**231 모델** – 입법령 231/2001 의 제 6 조에 따라 그룹 내 이탈리아의 각 회사를 위해 제공되는 조직, 관리 및 통제 모델.

**감독기관 또는 “Organismo di Vigilanza”** – 입법령 231/2001 의 제 6 조 준법 기관, 그룹 내 이탈리아의 각 회사를 위해 해당 모델의 이행 및 준수 감독 및 모델의 변경사항 반영에 책임이 있음

**내부고발자** –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신고 대상 주체** – 그룹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이며, 비리행위 신고 대상 주체

**비리행위의 신고**(이하 “신고”) – 불법행위나 법, 규정 및/또는 내부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회사의 직원과 또는 제 3 자와 관련지을 수 있는 태만을 포함한 모든 성격의) 행위 관련 회사가 접수한 모든 통신

**익명의 비리행위 신고** –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비리행위의 신고

**회사** – Prima Industrie 그룹의 각 회사 조직

**내부고발 예비 분석 보고** – 예비 분석 활동의 결론에서 회사의 내부 감사가 준비한 보고

**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 – 내부고발 관리 절차의 결론에서 회사의 내부 감사가 준비한 보고

**내부고발 등록부** – 접수된 모든 신고가 내부고발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리행위의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등록, 관리되는 등록부 등록부에는 또한(내부고발 예비 분석 보고에 따라) 예비 분석에 대해 및 가능한 조사(“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에 대해 결과를 상술합니다.

## 1. 목적

이 정책은 모범 사례, 참조 표준(예: ISO 37002) 및 EU 지침 2019/1937(EU 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 관련)에 따라 유럽연합 전반에 도입된 원칙에 따라 신고의 전달, 접수, 분석, 조사, 보고 및 기록을 포함한 비리행위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탈리아 법률에 관해서는, 이 정책은 "공적 또는 사적 고용 관계의 상황에서 인지하게 된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 작성자 보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법 179 호(2017 년)에 포함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정책은 입법령 231/2001 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리행위 신고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조직 모델 내에 포함된 원칙을 구현합니다.

## 2. 범위

본 정책은 Prima Industrie 그룹의 모든 회사 및 모든 비리행위 신고 유형에 적용됩니다. 비리행위 신고서는 직원이나 제 3 자 누구도 보낼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 3. 원칙

Prima Industrie 는 다음과 같은 당사의 내부고발 관리 절차의 원칙에 영향을 받으며 그 원칙을 따릅니다.

- **비밀유지:** Prima Industrie 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 및 신고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분석,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리되는 정보 및 내부고발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및 추가적인 회사 부서가 개입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둔 상태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 **제한된 공유:** Prima Industrie 는 비리행위 신고 및/또는 거기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알필요 원칙"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신고서 및/또는 정보는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과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객관성 및 공정성:** Prima Industrie 는 비리행위의 신고는 전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취급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없이 및 비리행위 신고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 없이 내부고발인이 진술한 것에만 토대로 하여 신고된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익명의 가능성:** Prima Industrie 는 모든 비리행위 신고에 대해, 따라서 내부고발인을 알 수 있는 신고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익명의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가 명백하고, 세부적이며 업무/전문적 범위에 관련되어 있는 한 완전한 관리를 보장합니다. 익명의 비리행위 신고는 필요 시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의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내부고발인을 접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둔 상태에서 비익명 형태로 이루어진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 및 분석됩니다.
- 보복으로부터 보호:** Prima Industrie 는 선의로 비리행위의 신고를 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위협, 보복 및/또는 차별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행동하는 내부고발인 또는 그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의의 비리행위 신고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복으로부터도 보호받으며, 해고되거나 직무 변경을 당하거나 업무 정지, 전보 또는 근무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다른 조직적 조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취급:** 획득된 모든 정보 및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며, 비리행위 신고의 목적을 위해 명백한 관련이나 관계가 없는 경우 고려 또는 처리,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부고발 관리 절차의 일환으로서 그룹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가능한 불법행위의 감행/사기 및/또는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관련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동의에 대한 필요 없이 내부 분석 및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고발 정책의 원칙에 벗어난 행위의 처벌:** 현행 노동 규정에 따라 그룹은 다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i) 내부고발인의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 (ii) 신고의 개인 주체를 비방, 중상 또는 그 외 손해를 끼칠 목적만을 위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및/또는 근거 없는 비리행위 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 (iii) 신고된 사실에 대해 그 가능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

#### 4. 내부고발 관리

##### 4.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Prima Industrie의 이름으로 또는 Prima Industrie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그룹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사람 또는 어떤 경우에서든 회사 활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내부고발인")은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 당 법인의 이사 및 직원(주주, 이사회, 상임감사위원회 등)
- 직원 및 다양한 규모의 그룹 협력자/파트너

- 제 3 자(예를 들어 협력사, 모든 유형의 계약이나 할당을 통한 컨설턴트, 중개회사 및 대리점과 같은 기관을 대행하는 개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업체, 유통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이해관계자)

#### 4.2. 신고할 내용 및 비리행위 신고의 특성

이전 단락에서 명시된 개인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명백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 및 행위에 대해 신고(**비리행위 신고**라 함)할 수 있습니다.

- 범죄와 관련된 행위, 여기에는 범죄, 침해 또는 불법행위, 또는 모든 경우의 법률이나 규정, 당국의 지침에 대한 위반이 포함됩니다.
- 윤리 강령에 포함된 원칙의 위반 또는 그룹의 다른 준법 프로그램(예: 부패방지 프로그램, 수출통제 매뉴얼 등)의 위반
- 입법령 231/2001 을 준수하는 조직 모델에 포함된 원칙의 위반, 또는 관련 구현 도구(예: 절차)의 위반(이탈리아 회사인 경우)
- 재정적 손해(사기, 횡령, 이해의 충돌) 또는 Prima Industrie 그룹에 이미지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
- 직원, 사용자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제 3 자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및 그들에게 금품이나 재화, 다른 이익을 제안하거나 수령, 요청
-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

모든 후속 조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성 및 최소 내용을 포함하는 비리행위 신고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 신고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일관된 사실 요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는 담당자가 필요하고 적절한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용한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는 유효성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신고 당사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장려하지만, 신고가 구체적 상황과 관련지어 충분히 세부적이고 사실과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비리행위의 익명 신고는 내부고발인의 보호에 대한 현행 규정에 명시적으로 관련짓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다음 특성을 **절대로 관련지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신고는 신고해도 “비리행위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내부고발인 개인적 성격의 불평
- 고용 관계의 정상적인 규율에 해당하는 주장/요청

### 4.3. 내부고발 처리를 관리하는 담당기관 및 신고 채널

Prima Industrie 는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를 **비리행위 신고의 수신자**로 지정했습니다. 신고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compliancehelpline@primaindustrie.com](mailto:compliancehelpline@primaindustrie.com)
- 전화번호: + 39 011 4103623
- 우편 주소: Prima Industrie S.p.A., Internal Audit, Risk & Compliance, Via Pianeza, 36, 10093 Collegno TO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위에 나열된 신고 채널의 유지를 보장하고, 그룹의 내부 및 외부 사이트를 통한 공개를 포함하여 적절한 공개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침 2019/1937 및 이탈리아 법률(법 제 179 호(2017) 및 법 53/2021)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위에 나열된 신고 채널은 내부고발인 및 데이터와 신고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보복 및/또는 차별 행위를 면제받도록 보장합니다.

직접 신고를 받은 부서 관리자, 상위 관리자 및 부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은 반드시 신속히 신고를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여 그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신고에서 확인한 내용과 모든 사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기관 및 HR 부서의 지적 및 평가에 따라) 징계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4.4. 내부고발 관리 절차

신고 관리를 위해 따라야 할 운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4.4.1. 단계 1: 예비 분석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절차의 후속 단계의 방향 설정에 맞춰 필요하고 적절한 평가를 보장하고, 최대한의 신속성과 객관성, 적격성 및 전문적 실사의 원칙 준수를 보장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였으면, 각 비리행위 신고는 **내부고발 등록부(부록 1 참조)**에 **신고 자체의 내용 및 특성에 관계 없이 신속히 등록됩니다.** 내부고발인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또한 내부고발인에게 신고 접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비리행위 신고 접수에 대한 답변**, 부록 2 참조).

신고를 등록한 후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신고에 대한 예비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 동안, 비밀유지 및 "알 필요" 기반의 원칙을 준수하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신고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합당한 회사 부서/기관의 개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룹 HR 부서 또는 해당 회사의 HR 부서**(비리행위의 신고가 현행 근로 규정의 위반 측면에서 또는 인사 및/또는 조직 관리 측면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경우)
- **그룹 법률 부서**(비리행위의 신고에 신고된 사실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법적 기량을 요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 및 안전 목적을 위한 관련 HSE 및/또는 고용주**(신고가 직원, 사용자 및 시민에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경우)
- **그룹 개인정보보호담당관(DPO) 또는 관련 회사의 DPO**(신고가 잠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
- **다른 그룹 부서**(구체적 필요가 있는 경우)
- **관련 이탈리아 회사의 감독기관**("Organismo di Vigilanza"라고 알려져 있음)(신고가 잠재적으로 입법령 231/2001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의 범행 또는 모델의 원칙이나 모델의 구현을 위한 도구(예: 절차)의 의심되거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관련이 있는 경우, 이 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임)

이 단계가 끝나면,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접수된 비리행위 신고의 내용과 예비 분석의 결과를 기술하고 다음과 같이 비리행위 신고를 분류하여 해당 **내부고발 예비 분석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명백히 근거 없음"**(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필요 없음)
- **"확인할 수 없음"**(신고 자체에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요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이 불가능함)
- **"확인 가능 및 조사 필요"**(신고가 충분히 상세하므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럼 다음 내부고발 예비 분석 보고서는 통제 및 위험 위원회, 상임감사 및 Prima Industrie S.p.A.의 회장에게 및 비밀유지 및 "알 필요"의 원칙 준수를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예비 분석" 단계에 참여한 부서 및 기관에 보내집니다. 문서의 내용은 또한 관리된 절차와 정보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 4.4.2. 단계2: 조사

"확인 가능 및 조사 필요"으로 등록된 신고에 대해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비리행위 신고의 내용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인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정의합니다.



비리행위 신고가 입법령 231/2001 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 이탈리아 회사의 감독기관은 조사의 진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통지 받아야 합니다.

신고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정보 및 문서에 대한 확인 및/또는 추가 사항 접수를 위해 개별 및 비밀 인터뷰를 위해 (익명이 아닌 경우) 내부고발인 접촉
- 신고된 사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면회
- 신고 확인 목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활동 수행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적절한 기밀유지 정의 및 비공개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입법령 231/2001 관련 적절한 비리행위 신고의 경우, 조사 지원에 외부 컨설턴트 및/또는 전문가의 참여 사실은 관련 회사의 감독기관에 보고됩니다.

조사 단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와 같은 비밀유지 제약 및 책임을 적용받으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 관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4.4.3. 단계3: 조사 후 취해야 할 조치의 정의**

조사를 마쳤으면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근거 없는 비리행위 신고"**: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결정된 비리행위의 신고인 경우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보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후속 조사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된 선의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 **"근거 없고 악의적 비리행위 신고"**: 조사한 결과 근거 없고 악의적이며 한 명 이상의 사람이나 회사의 부서 또는 그룹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고인 경우 및/또는 다른 직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경우,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악의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당부서에서 조건이 맞으면 관할 사법기관에 신고를 포함하여 처벌 및/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조치의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부서에 통지합니다.
- **"근거가 충분한 비리행위 신고"**: 근거가 충분한 (또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신고의 경우,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해당 회사의 부서에 통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치계획에는 형사, 민사 및/또는 행정범죄의 사법 당국에 신고는 물론 신고된 사람 및/또는 어떤 경우에도 신고한 불법 행위 및/또는 위반의 장본인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 채택 가능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231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회사의 감독기관과 합의하여 어떤 조직 모델의 채택 필요성이라도 있는지 결정합니다.

#### 4.4.4. 단계 4: 보고

내부고발 관리 절차의 결론에 따라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를 공식화합니다.

- 수행한 활동의 요약
- 주요 결과
- 신고를 기각하는 이유(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확인된 잠재적 차이
- 정의된 조치계획
- 신고의 주체 또는 악의적 내부고발인에 대한 처벌 부과
- 신고의 주체 또는 악의적 내부고발인에 대한 사법 절차의 개시 가능성

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서는 항상 통제 및 위험 위원회, 상임감사 및 Prima Industrie S.p.A.의 회장에게는 물론 관련 부서/회사의 관리자에게 및 신고의 해당 성격에 따라 관계된 회사의 감독 위원회("Organismo di Vigilanza")에 보내집니다.

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또한 관리된 절차와 정보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고발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보고 단계가 끝나면, 비익명 신고의 경우,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내부고발인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및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 부록 3 참조).

#### 4.5. 기록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및 비밀유지를 보장하여 모든 비리행위 신고의 등록과 신고 및 조사 하는 동안 생산된 모든 관련 문서의 추적성 및 정확한 기록을 보장해야 합니다.

#### 4.6. 모든 보복 및/또는 차별 행위의 처리

신고한 결과로 보복 및/또는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내부고발인은 자신의 감독자, 해당 HR 부서의 장 또는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에 알려 그들이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을 복원 및/또는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구제하기 위한 필요/기회
- 보복 및/또는 차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의 존재

내부고발인은 자신이 속한 노조 단체 또는 회사에 있는 대표 단체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 4.7. 징계조치의 적용

이 정책에 정의된 원칙에 따라 및 현행 노동법 조항에 따라 Prima Industrie 는 다음을 목표로 적절한 징계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신고한 사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비리행위 신고의 주체:** 수행한 조사에 따라 중대한 불법행위 및 내부 규정이나 절차의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직원 신고된 사람이 제 3 자인 경우, 그룹은 정의된 계약 문구의 조항에 따라 불이익 또는 즉각적인 계약의 종료를 적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내부고발인의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직원:**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적 행위를 보이거나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내부고발인의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직원
- **악의적 내부고발인:** 알면서 악의로 신고된 사람에 대한 또는 신고에 언급된 다른 개인에 대한 비방, 중상 또는 손해 목적만으로 거짓 및/또는 근거 없는 신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

또한, 이 정책의 원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 역할 및 책임

#### 5.1. 직원

잠재적으로 불법이거나 Prima Industrie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 정책의 범위에 속하는 윤리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실 또는 추정된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직원은 이 정책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비리행위 신고를 받은 직원은 어떠 이유를 위해서든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신고를 신속히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및 내부고발인의 신원에 대해 비밀유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 5.2.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

- 신고 채널의 관리 및 유지를 보장합니다.

- 비리행위 신고를 신속히 분석하고 신고의 성격을 고려하고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여 이를 해당 부서/기관(예: 입법령 231/2001 의 목적에 관련된 신고인 경우 참여한 회사의 감독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목적에 관련된 신고의 경우 참여한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담당관 등)에 통지합니다.
- 신고의 성격에 따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다른 해당 회사 부서/기관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주기적으로 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 수행할 감사 활동을 계획하고 직접 또는 제 3 자 전문가를 임명을 통해 감사 활동의 실행을 관리합니다.
- 통제 및 위험 위원회, 상임감사, Prima Industrie S.p.A.의 회장에게 신고의 접수 및 예비 분석결과에 대해 내부고발 예비 분석 보고의 준비를 통해, 수행된 조사 및 개선 조치의 결과에 대해 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의 준비를 통해 통지합니다.
- 사례의 특성에 따라 감독기관 및 접수한 비리행위의 신고 관리에 참여한 회사의 상임감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 내부고발 신고의 등록 및 관련 문서의 보관을 보장하며, 내부고발 등록부의 유지를 관리합니다.

### 5.3. 비리행위의 신고에 참여한 회사의 감독위원회

- 입법령 231/2001 의 목적에 관련된 신고와 관련한 조사에 외부 컨설턴트의 참여 가능성을 알립니다.
-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31 모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6. 기타 관련 문서

- Prima Industrie 그룹의 윤리 강령
- 입법령 231/2001 에 따른 조직, 관리 및 통제 모델(이탈리아 회사인 경우)
- 부패방지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룹 회사용)
- 수출 통제 매뉴얼(해당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룹 회사용)

**부록 1 - 내부고발 등록부 템플릿**

<b>1. 비리행위 신고 확인 데이터</b>	
비리행위 신고 기록서 번호:	
신고 접수일:	
신고 접수 수단:	
신고의 유형: 익명/비익명	
신고와 관련된 회사:	
내부고발인:	
비리행위의 신고(신고 전문 상세히 기술):	
신고에 첨부된 문서:	
비리행위 신고 접수에 대한 답변: 보냈음/보내지 않았음	
잠재적으로 입법령 231/01 의 목적에 관련된 신고(이탈리아 회사인 경우만): 예/아니요	
<b>2. 예비 분석</b>	
신고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비 분석에 참여한 다른 회사 부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이름(명시하십시오)</li> <li>• 부서 이름(명시하십시오)</li> <li>• ...</li> </ul>	
예비 분석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히 근거 없음"(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필요 없음)</li> <li>• "확인할 수 없음"(신고 자체에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요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이 불가능함)</li> <li>• "확인 가능 및 조사 필요".</li> </ul>	
내부고발 예비 분석 보고 발송처(발송일: DD-MM-YYY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제 및 위험 위원회</li> <li>• 상임감사</li> <li>• Prima Industrie S.p.A 의 회장</li> <li>• 기타(명시하십시오)</li> <li>• 기타(명시하십시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ul>
<b>3. 수행된 조사 및 취한 조치("확인 가능/조사 필요" 신고의 경우만)</b>
<b>조사에 참여한 제 3 자(해당하는 경우):</b>
<b>수행된 절차 요약:</b>
<b>조사 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없는 신고"</li> <li>• "근거 없고 악의적 신고".</li> <li>• "근거가 충분한 신고"</li> </ul>
<b>신고를 기록하는 이유(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b>
<b>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개선 대상 영역:</b>
<b>조치계획 및 확인된 개선사항:</b>
<b>신고의 주체 또는 악의로 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조치:</b>
<b>최종 내부고발 조사 보고 발송처(발송일: DD-MM-YYY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제 및 위험 위원회</li> <li>• 상임감사</li> <li>• Prima Industrie S.p.A 의 회장</li> <li>• 기타(명시하십시오)</li> <li>• 기타(명시하십시오)</li> <li>• ...</li> </ul>
<b>조사 결과의 답변:</b> 보냈음/보내지 않았음

## 부록 2 - 비리행위 신고 접수에 대한 답변

“내부고발인”님께

당사는 귀하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번호 제 YYY-NNN 호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의 성격을 조사하여 신고의 유효성 및 확인 가능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 접수된 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한된 공유,
- 수행될 분석의 객관성 및 공정성,
- 귀하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 및/또는 차별로부터의 보호,
- 내부고발 정책의 원칙에 벗어난 행위의 처벌.

신고된 사항에 관한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가 나오면 해당 정보를 주저 없이 그리고 절대 안전한 당□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실것을 요청합니다.

[compliancehelpline@primaindustrie.com](mailto:compliancehelpline@primaindustrie.com).

신고의 예비 분석에 따라 깊이 있는 조사의 착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당사는 조사의 완료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의 장

### 부록 3 –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내부고발인”님께

당사는 번호 제 YYY-NNN 호로 등록된 귀하의 신고에 따라 해당 신고가 추가 조사 대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가 후속으로 실시되었고, YYY-MM-DD 에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행된 조사에 따라 신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 “근거 없는 비리행위 신고”
- “근거 없고 악의적 비리행위 신고”
- “근거가 충분한 비리행위 신고”

[PARTE IN ROSSO DA VALUTARE – NON OBBLIGATORIA]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따르기 위해 조사 결과는 회사의 집행 및 통제 기관에 보고되었습니다.

당사는 조사는 다음을 보장하면서 수행되었으며, 조사로부터 파생될 모든 후속 활동 또한 그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접수된 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한된 공유,
- 수행될 분석의 객관성 및 공정성,
- 귀하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 및/또는 차별로부터의 보호,
- 내부고발 정책의 원칙에 벗어난 행위의 처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감사 위험 및 준법감시부서의 장